



#### 4)기 타

-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213호
  - . 예고기간: 2026. 1. 27.~2026. 2. 19.(23일간)
  - . 예고결과: 의견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 가. 주요 검토내용

- (안 제7조) 기존 조례의 제7조 전시물 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관련 내용과 통합하여 조례 체계를 간소화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함.
- (안 제7조 ③항) 군수가 전수교육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비용을 수탁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 안정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제7조 삭제에 따라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조항을 제7조부터 제13조로 순차 조정한 것은 단순한 조례 체계 정비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나.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시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저촉되지 않으며 관리·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6. 3. 26.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